

AI디자인연구센터 규정

제정 2020. 11. 9.

제1조 (명칭) 본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부설 AI디자인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전기구동의 일반 모빌리티 디자인 및 스마트 모빌리티의 외관 및 내관 디자인, AI 응용기술을 통한 디자인 대상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창의적 디자인 연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연구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프로세스로, 디지털 디자인 및 컴퓨터 3D 시뮬레이션등으로 디자인 대상의 과정 및 결과물을 시각화
2. 탑승형 모빌리티의 내부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선행디자인 제안 및 결과물의 시각화

제5조 (구성)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 1명
2. 운영위원 : 약간 명
3. 연구위원 : 약간 명

제6조 (위촉)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7조 (센터장의 직능)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 국책연구비, 연구용역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폐쇄) 연구센터가 폐쇄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12조 (보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센터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센터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센터와 관련한 자료

제13조 (준용) 연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